

18. 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中改正令

總理令 第535號 1995.12.30
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) ①영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“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”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(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중 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②영 제13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다.

제44조의 제목“(세금우대저축명세서)”를“(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)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영 제79조의2 제2항의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

제4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대통령령 제14,869호 부칙 제10조 제

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 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) ①영 제88조의4 제4항에 규정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다.

②영 제88조의4 제4항에 규정하는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.

1.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생한 미분양주택확인서
2. 당해 금융기관의 장(지점·대리점·영업소의 장을 포함한다)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
3.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

[별지 제28호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28호의2서식]·[별지 제40호서식]·[별지 제41호서식]·[별지 제41호서식 부표]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작 성 요 령

1. 「저축명」란에는 해당 저축명(장기주택마련저축, 개인연금저축, 소액가계저축, 소액채권저축, 세금우대예탁금, 출자금 또는 가계생활자금저축)을 기재합니다. 다만, 소액가계저축중 신탁형저축의 경우에는 “소액가계(신탁)저축”으로 기재합니다.
2. 세금우대예탁금(출자금)의 경우에는 조합원(회원)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.
3. ②의 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, 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.
4. ④의 통장개설연월일란과 ⑤의 통장해지연월일란은 당해 저축통장의 개설(해지)일, 가입계약(해지)일 또는 등록(등록말소)일을 각각 기재합니다.
5. ⑥의 비고란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월기준 저축불입금액을 기입합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골자◇

근속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,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 공제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〈법제처 제공〉

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